

보도시점 2024. 5. 31.(금) 10:00 배포 2024. 5. 30.(목)

환경부-농식품부가 “같이” 가축분뇨의 새로운 “가치” 만든다

- 환경부-농식품부,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

환경부(장관 한화진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5월 31일 오전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‘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한다.

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, 현재 퇴·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.

이에 양 부처는 △바이오차*·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, △퇴·액비 적정관리, △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, △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.

* 바이오차(biochar) : 생물에너지원(바이오매스)와 숯(차콜)의 합성어

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각각 관장하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·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,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가축분뇨는 잘 활용하면 귀중한 영양분이 되지만 그 양이 늘면서 처리방식의 다각화가 매우 중요해졌다”라며, “가축분뇨가 생물에너지원 등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“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책무는 상호대립이 아닌 보완적 과제”라고 하면서, “이번 협업도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물론, 신산업 육성 등 양 부처의 한계를 넘어 상승효과(시너지)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- 붙임 1. 환경부-농식품부 업무협약 행사 개요.
2. 업무협약서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 수질수생태과	책임자	과 장	양우근 (044-201-7060)
		담당자	사무관	한상우 (044-201-7076)
	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	책임자	과 장	서준한 (044-201-2351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정 (044-201-2362)



□ **업무협약 개요**

○ (일시) '24.5.31(금)

○ (장소) 논산계룡축협*

* 위치: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499번길 52-109

○ (주요 메시지)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변화(고체연료화, 바이오차 등), 퇴·액비 적정관리,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등 상호 협력

□ **세부 일정(안) : ¹부기관 간 MOU 체결, ²부현장 시찰**

구분	시간	주요 내용
사전 환담	10:00~10:10 10'	· 사전 환담(주요 내빈, VIP룸)
1부 (30)	10:10~10:15 5'	· 행사장 입장 및 내빈 소개(사회자)
	10:15~10:20 5'	· 동영상(2:30) * 가축분뇨 새로운 가치를 찾다! : 탄소중립과 농업·농촌의 지속을 위한 고체연료, 바이오가스, 바이오차 등 분뇨처리방식의 변화 메시지 전달
	10:20~10:23 3'	· 인사말씀 : 농식품부 장관
	10:23~10:26 3'	· 인사말씀 : 환경부 장관
	10:26~10:40 14'	· 환경부-농식품부 업무협력 MOU 체결 및 기념촬영
2부 (20)	10:40~11:00 20'	· 현장 시찰

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환경부-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협약서

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'농식품부'라 한다)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신산업 활성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 협약(이하 '협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부처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「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」를 위해 환경부-농식품부가 상생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분야)

양 부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,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-바이오가스-고체연료 생산 등 처리방식 다각화를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2. 가축분뇨 퇴·액비의 적정 관리를 통한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3. 가축분뇨 관련 규제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.
4.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5. 가축분뇨 관련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 부처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제3조(정보교환) 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부처는 업무 협력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.

제5조(협약서의 효력) ①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,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.

② 본 협약은 양 부처의 합의로 해지될 수 있으며, 해지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.

제6조(기타) 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부처 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양 부처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5월 31일



관 경 부 장 관
한 화 장 진



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
송 미 령